

(사)한국건축역사학회 시상 및 표창 규정

제정 2016년 4월 16일
개정 2017년 9월 9일
개정 2018년 4월 21일
개정 2019년 11월 23일
개정 2024년 11월 3일
개정 2024년 12월 27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건축역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수여하는 종 포상(褒賞) 및 표창(表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 대상)

본 학회에서 시상하는 상(賞)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송헌논문상>은 기금 출연자인 김일진 초대회장의 뜻에 따라 매년 본 학회 학술지(건축역사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최우수 논문 1편을 선정 시상하며, 심사와 선정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송헌논문상운영규정'에 따른다.
- ② <학술상>은 정회원 중에서 건축사학 및 이론 부문 학술 연구와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 ③ <우수석사논문상>은 건축사학과 이론 분야를 연구하여 우수한 석사논문을 저술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 ④ <우수논문발표상>은 춘·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 ⑤ <작품상>은 건축설계 분야에서 건축 및 도시의 역사적 맥락을 뛰어나게 해석하여 적층된 시간의 힘을 창의적으로 드러낸 최근 준공작을 대상으로 하며, 그 건축가에게 수여한다. 작품의 추천과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한국건축역사학회 작품상 운영규정'에 따른다.
- ⑥ <문화유산보존기술논문상>은 매년 학회 논문집 및 춘·추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된 논문 가운데, 문화유산보존기술 분야의 학문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논문 1편을 선정해 그 저자에게 시상하며, 논문의 추천과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사)한국건축역사학회 문화유산보존기술논문상 시상 규정'에 따른다.
- ⑦ 이 밖에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3조 (표창의 종류와 추천)

- ① 본 학회의 표창은 공로상(공로패), 감사장(감사패)으로 구분된다.
 - 공로상(또는 공로패)은 헌신적인 봉사로써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정회원에게 수여한다.
 - 감사장(또는 감사패)은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 기업, 단체나 대표자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 ② 표창의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공로상, 공로패 및 감사장, 감사패는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수여한다.
 - 표창후보자는 3인 이상의 이사 또는 회장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추천 받은 후보자 중에서 표창자를 선정한다. 표창 후보자의 공적 조서 작성과 이사회에 추천하는 업무는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제4조 (수상자 후보자의 자격)

시상 및 표창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술상>의 수상후보자는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으로 다른 회원의 귀감이 될 우수한 연구업적 및 학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있어야 한다.
 - 시상일 기준 10년 이상 본회 정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미납 회비가 없어야 한다.
- ② <우수석사논문상>의 수상후보자는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석사학위 논문을 저술해야 한다.

- 본 학회 정회원으로 미납 회비가 없어야 한다.
- ③ <우수논문발표상>의 수상후보자는 아래 기준 및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본 학회 회원으로, 미납 회비가 없어야 한다.
 - 대학원 학생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한 학부생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④ 공로상(공로패) 수상자는 시상일 기준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공로가 현저해야 하며, 미납 회비가 없어야 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선정과 추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송현논문상>의 심사 및 수상 후보자 선정은 별도의 송현논문상 운영규정을 따른다.
- ② <학술상>: 학술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가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연구업적 및 학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 ③ <우수석사논문상>: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석사논문을 대상으로 당해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선정한다.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으면 수상후보자로 확정된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우수박사논문상도 시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 선정은 우수석사논문상의 선정 절차를 준용한다.
- ④ <우수논문발표상>: 춘·추계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회원을 대상으로 당해 심사위원회가 논문의 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 ⑤ 정부 훈포장 수상후보자 및 기타 상의 수상후보자는 학회의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회장에게 추천한다.

제6조 (학술상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학술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술상을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학술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학술부회장)을 포함 7인(당연직4인, 이사회 추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에는 편집위원장(논문부회장), 학술이사 및 총무이사를 포함한다. 위원이 후보자로 추천되었을 때는 해당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 ③ 학술상심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의 연구업적과 공적 등을 평가하여 최종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며, 또한 수상자 선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경과와 요지는 회의록에 기록하고,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학술상 수여시 심사위원장은 회원들에게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한다.
- ④ 학술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可否) 동수(同數)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⑥ 위원회의 간사는 학회 사무국의 간사가 맡는다.

제7조 (학술상 수상자 확정)

학술상 수상자의 확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술상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학술상 수상후보자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수상자로 확정된다.
- ② 출석이사 중 과반수이상이 수상후보자의 학술상 시상을 반대할 경우 회장은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을 요구받은 심사위원회는 반드시 재심을 해야 하고, 심사위원 2/3이상이 동의할 경우 재의결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전과 같은 절차로 수상자를 확정한다. 단, 시일이 촉박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수상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시상한다.
- ③ 학술상 수상자가 확정되면 회장은 본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상자 명단과 심사의견 등을 공지한다.

- ④ <우수석사논문상>은 심사위원회(위원장: 학술부회장, 위원: 논문편집위원장, 학술이사, 총무이사, 홍보이사)에서 수상후보자를 회장에게 추천하고, 회장은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수상자로 결정하고 명단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⑤ <우수논문발표상>은 심사위원회(위원장 : 학술이사, 위원: 해당 분과 좌장과 토론자)에서 수상 후보자를 회장에게 추천하면, 회장은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수상자로 결정하고 명단을 학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제8조 (시상)

시상의 시기(時期) 및 부상(副賞)은 아래와 같다.

- ① 송헌논문상은 매년 추계 학술대회(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상자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며, 단, 기금 사정에 따라 상금의 액수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학술상은 추계학술대회(11월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을 수여한다.
- ③ 우수석사논문상은 춘계학술대회(5월 임시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 ④ 우수논문발표상은 춘추계 학술대회 폐회식 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며,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 ⑤ 각 상의 부상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 (시상의 취소)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수상자가 3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장과 부상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상에 대한 결격 사유가 드러날 경우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수상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먼저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시상의 취소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시상의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0조 (수상자 등의 명부 보관)

학회 사무국은 수상자와 표창자의 명부를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① 공로상(또는 공로패)과 감사장(또는 감사패)의 신청서 양식 및 공로상(공로패), 감사장(감사패)의 내용 및 형식, 제작 업무는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 ② <송헌논문상>, <학술상>, <우수석사논문상>, <우수논문발표상> 등의 학술 관련 시상의 신청서 양식 및 상장의 내용은 학술이사가 맡고, 상장과 상패의 제작은 총무이사가 업무를 처리한다.
- ③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 시행 방침에 따른다.